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 의 자 : 김원이 · 허 영 · 서삼석
백혜련 · 김승원 · 오세희
소병훈 · 김한규 · 허종식
고민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, 「지식재산 기본법」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·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.

그러나 2011년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.

이에,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·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, 위원회의 간사를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나.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,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7조제4항).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대통령”을 “국무총리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“대통령이”를 “국무총리가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본다.

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(위원장을 포함한다)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잔

여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·평가하기 위하여 <u>대통령</u>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6조(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무총리</u>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· ② (생략)	제7조(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<u>대통령이</u> 위촉하는 사람	2. ----- ----- <u>국무총리가</u> -----
<u><신 설></u>	<u>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.</u>
④ ~ ⑦ (생략)	⑤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